

## 중앙은행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아시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

高 東 源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助教授)

### < 目 次 >

|                                     |                                     |
|-------------------------------------|-------------------------------------|
| I. 머리말                              | 1. '건전한 금융 산업 발전의 증진'을 목적 조항에 추가    |
| II. 아시아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입법례 | 2.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 조항에 추가 |
| 1. 일본                               | 3. '금융 안정의 도모'를 목적 조항에 추가           |
| 2. 싱가포르                             | IV. 맺음말                             |
| 3. 말레이시아                            |                                     |
| 4. 대만(중화민국)                         | 參考文獻                                |
| III.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SUMMARY                             |

## I. 머리말

최근 금융 산업은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즉 금융 산업에 있어서 국제화·개방화·전문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금융의 정보화 및 혁신화(innovation)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금융 산업의 환경 하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 중심지 국가로 발전시키려는 현 정부의

발전 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를 국제 금융센터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여러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이외에 지급결제제도의 관리·감시 업무 및 금융 안정(financial stability) 도모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 환경 하에서 보다 안정된 금융시스템 및 금융인프라(infra)를 구축하고 우리나라를 선진화된 금융 산업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금융 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중앙은행의 역할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새로이 변화되고 있는 금융 환경 및 동북아 금융 중심지 국가 추진 전략에 맞추어 요구되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 허브 국가를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의 목적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기능 제고를 위한 방향 제시를 함에 있다. 이에 따라 II.에서는 금융 선진국인 일본 및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대만 등 아시아 금융 중심지 국가로 육성하고 있는 나라들의 중앙은행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해보며, III.에서는 그러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 II. 아시아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입법례

### 1. 일본

#### (1) 목적

일본은행법에 의하면,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i) 은행권을 발행하고 통화 및 금융을 조절하며, (ii) 은행 및 기타 다른 금융기관 간의 자금 결제의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 또한 일본은행은 통화 및 금융의 조절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가 안정의 도모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 이 글은 2004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인 「주요국 중앙은행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비교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의 내용 중 일부분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일본은행법(1942년 제정, 2001년 가장 최근 개정) 제1조.

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한다.<sup>2)</sup>

## (2) 기능

일본은행의 주요 기능은 (i) 화폐 발행 업무, (ii) 지급준비제도 운영 업무, (iii)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업무, (iv) 공개시장 조작 업무, (v)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 (vi) 국고금 관리 업무 및 정부에 대한 대출 업무, (vii) 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viii) 외국환 매매 업무, (ix) 국제금융 관련 업무, (x) 고사(考査) 업무 등이다. 일본은행은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권한은 없지만(은행감독권은 금융청이 수행한다), 일본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임점하여 조사하는 고사권(考査權)을 가지고 있다.

### 1) 화폐 발행 업무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은행권을 발행하며, 일본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이하 “일본은행권”이라 한다)은 법화로서 무제한 통용된다.<sup>3)</sup> 일본은행권의 종류는 정령(定令)에서 정하며, 일본은행권의 양식은 재무성이 정하며 이를 공시한다.<sup>4)</sup> 일본은행은 재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 훼손, 기타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일본은행권을 수수료 없이 교환해주어야 한다.<sup>5)</sup> 일본은행은 일본은행권의 제조 및 소각의 절차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 재무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무성은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와 이유를 동 신청의 내용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sup>6)</sup>

### 2) 지급준비제도 운영 업무

일본은행의 정책위원회(Policy Board)는 ‘지급준비제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준비율과 기준일 등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sup>7)</sup>

2) 일본은행법 제2조.

3) 일본은행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4) 일본은행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5) 일본은행법 제48조.

6) 일본은행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4항.

7) 일본은행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업무

일본은행은 (i) 상업어음 및 기타 어음의 할인 업무 및 (ii) 어음,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담보 대출의 업무를 수행한다.<sup>8)</sup> 이외에도 일본은행은 금융기관 등<sup>9)</sup>에 대한 일시 대출로서, 금융기관 등이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고장 또는 기타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견하기 어려운 지급 자금의 일시적인 부족이 발생한 경우, 그 지급 부족액이 즉시 확보되지 않으면 당해 금융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융기관 간의 자금 결제의 원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정령(定令)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하여 무담보로 그 지급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sup>10)</sup> 이 경우에 일본은행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 및 재무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up>11)</sup> 이러한 일시 대출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sup>12)</sup>

일본은행의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정책위원회는 (i) 어음의 할인과 관련한 기준 할인을 및 기타 할인과 동 할인과 관련한 어음의 종류 및 조건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ii) 대출과 관련한 기준 대출 이자율 및 기타 대출 이자율과 동 대출과 관련한 담보의 종류·조건 및 금액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sup>13)</sup>

### 4) 공개시장 조작 업무

일본은행은 상업어음 및 기타 어음(일본은행이 발행한 어음을 포함한다) 또는 국채 및 기타 채권의 매매 업무를 수행한다.<sup>14)</sup> 정책위원회는 어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기타 방법에 의한 금융시장 조절(공개시장 조작을 포함한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화 및 금융의 조절을 포함한다)의 방침과 동 금융시장 조절과 관련한 어음 또는 채권의 종류·조건 및 기타 사항의 결정과 변경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sup>15)</sup>

8) 일본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9) '금융기관 등'은 (i) 은행 및 기타 예금 등의 수취 및 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ii) 기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정령(定令)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일본은행법 제37조 제1항.

10) 일본은행법 제37조 제1항.

11) 일본은행법 제37조 제2항.

12) 일본은행법 제15조 제2항 제1호.

13) 일본은행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4) 일본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3호.

15) 일본은행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5)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

내각총리대신 및 재무성은 은행법 제57조의2의 규정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기하여 신용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본은행에 대하여 당해 협의와 관련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 및 기타 신용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sup>16)</sup> 이 경우 일본은행은 일본은행법 제33조에 규정된 통상업무 이외에 당해 요청에 따라 특별한 조건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기타 신용질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sup>17)</sup>

#### 6) 국고금 관리 업무 및 정부에 대한 대출 업무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법령(法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취급 업무 및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sup>18)</sup>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 및 금융에 관한 국가 사무 업무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sup>19)</sup>

이외에도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에 대하여 (i) 재정법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해 국회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 내에서의 무담보대출, (ii) 재정법 및 기타 정부의 회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시 차입금에 대한 무담보대출, (iii) 재정법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해, 국회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 내에서의 국채의 응모 또는 인수, (iv) 재무성증권 및 기타 유통증권의 응모 또는 인수, (v) 귀금속 및 기타 물품의 보호예수 업무를 수행한다.<sup>20)</sup>

#### 7) 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일본은행은 내각총리대신 및 재무성의 인가를 받아 (i) 예수금, 내국환거래, 유가증권 등의 보호예수 업무, 또는 (ii) 국고금이나 국가사무의 취급과 관련한 업무를 일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sup>21)</sup>

16) 일본은행법 제38조 제1항.

17) 일본은행법 제38조 제2항.

18) 일본은행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19) 일본은행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20) 일본은행법 제34조.

#### 8) 외국환 매매 업무

일본은행은 스스로 필요에 따라 또는 국가사무의 취급자로서 외국환을 매매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으로서 외국 중앙은행 등(외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환 매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sup>22)</sup> 또한 일본은행은 국가사무의 취급자로서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의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환 매매 업무를 수행한다.<sup>23)</sup>

#### 9) 국제금융 관련 업무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외국 중앙은행 등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i) 자국통화로 표시된 예금과 관련된 예수금, (ii) 예수금 수취 업무에 따라 수취한 예금을 대가로 하는 국채의 매도 및 매입, (iii) 유가증권·귀금속 및 기타 물품의 보호예수, (iv) 외국 중앙은행 등 또는 국제기구가 행하는 국채 매매의 알선·중개 또는 대리, (v) 기타 외국 중앙은행 등 또는 국제기구와 자국통화 또는 자국통화 표시 자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재무성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sup>24)</sup>

이외에도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외국 중앙은행 등 또는 국제기구와 국제금융 지원 및 기타 국제금융면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무성의 요청이나 또는 사전 승인을 얻어 (i) 국제결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 중앙은행 등에 대한 대출채권의 양수, (ii) 외국 중앙은행 등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신용 공여의 업무 또는 (iii)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sup>25)</sup>

#### 10) 고사(考査) 업무

일본의 경우 금융감독권은 금융청에 있고, 일본은행은 제한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일본은행법에 따라 일부 업무와 관련하여 동 업무의 상대방이 되는 금융기관(이하 “거래 금융기관”이라 한다) 등의 업무 및

21) 일본은행법 제39조 제1항.

22) 일본은행법 제40조 제1항.

23) 일본은행법 제40조 제2항.

24) 일본은행법 제41조.

25) 일본은행법 제42조.

재산 상황에 대하여 임점하여 조사하는 고사(考査)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sup>26)</sup> 즉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 대출 업무,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 및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또한 동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기 위하여 거래 금융기관 등과 고사(考査)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sup>27)</sup> 일본은행이 고사(考査)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거래 금융기관 등에 연락하여 그 승낙을 얻어야 하며 기타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sup>28)</sup>

일본은행은 고사(考査) 수행 시 당해 고사(考査)에 수반되는 거래 금융기관 등의 사무 부담을 배려하여야 하며, 금융청이 요청하는 경우 고사(考査)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 및 기타 고사(考査) 관련 자료를 금융청에 제출하거나 금융청 소속 직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sup>29)</sup> 위 고사(考査)에 관한 계약 내용 및 각 사업년도의 고사(考査)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sup>30)</sup>

#### 11) 규정된 업무 이외의 추가 업무 수행

일본은행은 원칙적으로 일본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일본은행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sup>31)</sup> 다만 일본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은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무성 및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일본은행법에 규정된 일본은행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sup>32)</sup>

## 2. 싱가포르

### (1) 목적

싱가포르통화청법(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에 의하면,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목적은 (i) 정부의 은행 및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ii) 정부의 일반 경제 정책

26) 일본은행법 제44조 제1항.

27) 일본은행법 제44조 제1항.

28) 일본은행법 제44조 제1항.

29) 일본은행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30) 일본은행법 제15조 제2항 제5호.

31) 일본은행법 제43조 제1항.

32) 일본은행법 제43조 제1항.

의 범위 내에서 경제 성장에 부합하는 통화의 안정과 신용 및 환(換) 제도의 증진을 도모하며, (iii) 건전하고 발전적인 금융서비스 부문을 육성하며, (iv) 싱가포르 통화청법 제21조에 의하여 싱가포르통화청에 이관된 금융 감독 및 외국환 관리 등의 의무 및 기능을 수행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sup>33)</sup>

## (2) 기능

싱가포르통화청의 주요 기능은 (i) 예금의 수입 등의 업무, (ii) 어음 할인(재할인) 및 대출 업무, (iii) 증권 매매 업무, (iv) 투자 업무, (v) 정부의 은행 및 재정대리인으로서의 업무, (vi) 대외자산 운용 업무, (vii) 금융기관에 대한 지시 업무, (viii) 금융기관의 설립 승인 업무, (ix) 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x) 금융센터 육성 및 금융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의 업무, (xi) 금융 감독 및 외국환 관리 업무 등이다. 한편 싱가포르통화청은 은행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

### 1) 예금 수입 등의 업무

싱가포르통화청은 정부, 정부기관, 정부나 정부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은행 및 다른 신용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수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sup>34)</sup> 싱가포르 국내외에서 싱가포르통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하거나 보증을 하는 업무도 할 수 있다.<sup>35)</sup>

### 2) 어음 할인(재할인) 및 대출 업무

싱가포르통화청은 정부재정증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어음 및 약속어음, 싱가포르 국외에서 발행되는 환어음 및 정부재정증권 등을 할인하거나 재할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sup>36)</sup> 이외에 싱가포르통화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게 대출 등의 신용 공여 업무를 수행한다.<sup>37)</sup> 또한 싱가포르통화청은 특별 대출로서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

3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4.

34)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3(1)(a), (o).

35)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3(1)(k).

3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3(1)(d), (f), (j).

37)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3(1)(g).

중의 확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은행법(Banking Act)에 의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나 싱가포르통화청이 정하는 다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으로 대출 또는 다른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다.<sup>38)</sup>

### 3) 증권 매매 업무

싱가포르통화청은 (i) 정부 및 정부기관이 공모로 발행한 증권, (ii)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어음 및 약속어음, (iii) 싱가포르 국외에서 발행되는 환어음 및 정부채정증권, (iv) 싱가포르통화청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승인한 정부나 국제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권, (v) 싱가포르통화청이사회가 추천하고 총재가 승인한 증권 등을 매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sup>39)</sup>

### 4) 투자 업무

싱가포르통화청은 싱가포르통화청의 내부 기금 등으로 정부나 정부기관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거나, 싱가포르의 금융 및 증권 시장의 발전을 증진할 목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일반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sup>40)</sup>

### 5) 정부의 은행 및 재정대리인으로서의 업무

싱가포르통화청은 정부의 은행 및 재정대리인(financial agen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sup>41)</sup> 싱가포르통화청은 정부계정을 통하여 국고금의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구한다.<sup>42)</sup> 싱가포르통화청은 정부와 싱가포르통화청이 약정한 조건에 따라 정부의 재정대리인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한다.<sup>43)</sup> 이외에도 싱가포르통화청은 정부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38)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6.

39)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3(1)(e), (f), (j), (m).

40)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3(1)(h), (i).

4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5(1).

42)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5(2).

4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5(3).

#### 6) 대외자산 운용 업무

싱가포르통화청은 금융절차법(Financial Procedure Act)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대외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도 수행한다.<sup>44)</sup>

#### 7) 금융기관에 대한 지시 업무

싱가포르통화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sup>45)</sup>

#### 8) 금융기관의 설립 승인 업무

싱가포르통화청은 영업 활동이 (i) 싱가포르의 통화 안정과 신용 및 환(換) 제도, (ii) 금융센터로서의 싱가포르의 발전이나 (iii) 싱가포르의 금융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싱가포르통화청이 판단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싱가포르통화청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sup>46)</sup> 싱가포르통화청은 이러한 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해줄 수도 있다.<sup>47)</sup> 또한 싱가포르통화청은 금융기관의 영업 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침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sup>48)</sup>

더 나아가서 싱가포르통화청은 (i) 금융기관 설립 승인 신청서류가 나중에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인 것이 판명된 경우나, (ii) 금융기관이 승인 조건이나 지시 또는 지침에 위반하거나, (iii) 금융기관이 예금자나 고객의 이익에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iv)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sup>49)</sup>

#### 9) 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44)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5(4).

45)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7(1).

4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8(1).

47)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8(2).

48)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8(4).

49)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8(5).

싱가포르통화청은 싱가포르통화청이 승인한 참가기관(싱가포르통화청을 포함한다) 간에 자금 이체, 지급채무의 결제, 대체계좌증권이나 채무증서의 결제 등을 위한 실시간거액결제시스템(real-time gross settlement systems)을 운영할 수 있다.<sup>50)</sup> 실시간거액결제시스템은 지급채무나 증권 또는 채무증서의 결제를 위해서 싱가포르 국내외에 있는 다른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다.<sup>51)</sup>

싱가포르통화청은 실시간거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과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시간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참가기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sup>52)</sup> 싱가포르통화청은 실시간거액결제시스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간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정지하거나 참가기관의 권리나 특권을 배제 또는 정지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동 규칙에 포함할 수 있다.<sup>53)</sup>

#### 10) 금융센터 육성 및 금융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의 업무

싱가포르통화청은 재무부의 지시 범위 내에서 정부가 출연하는 자금이나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설치된 금융부문개발기금(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을 관리 운영한다.<sup>54)</sup> 동 기금은 (i) 싱가포르의 금융센터로의 육성, (ii) 금융서비스 부문에 요구되는 기술이나 경험의 개발 및 향상, (iii) 금융서비스부문과 관련된 교육 및 개발 기관,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개발과 지원, (iv) 금융서비스부문을 지원할 인프라의 개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sup>55)</sup> 동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싱가포르통화청은 동 기금이 싱가포르 국내외에서 (i) 동 기금의 목적을 위해서 기술이나 경험의 증진을 위한 훈련 과정 및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을 만들거나 확장 또는 유지하는데, (ii) 그러한 목적에 맞게 장학금, 보조금, 대출금 기타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하여, (iii) 재무부가 승인하는 동 기금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도록 하여야 한다.<sup>56)</sup> 싱가포르통화청은 관련법에서 허용된 방법이나 재무부가 정하는 방법으로 동 기금을 투자 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 운용 권한을 싱가포르통화청이 지명한 직원이나 대리인에게 위

50)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9A(1).

5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9A(2).

52)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9A(3).

5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9(4)(d).

54)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30A(1), (2).

55)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30B(1).

5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30B(2).

임할 수도 있다.<sup>57)</sup>

### 11) 금융 감독 및 외환 관리 업무

싱가포르통화청법에 의하면, 싱가포르통화청은 1971년 1월 1일부터 (i) 은행법에 의하여 재무부·은행감독위원장(Commissioner of Banking), 회계감독관(Accountant-General)에게 부여된 기능·의무 및 권한을 넘겨받고, (ii) 금융회사법(Finance Companies Act)에 의하여 부여된 재무부·금융회사감독위원장(Commissioner of Finance Companies) 및 회계감독관에 부여된 기능·의무 및 권한을 넘겨받으며, (iii)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에 의하여 재무부 및 외환감독관(Controllor of Foreign Exchange)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sup>58)</sup> 이외에도 싱가포르통화청은 1984년 9월 21일부터 보험법(Insurance Act)에 의하여 보험감독위원장(Commissioner of Insurance)에게 부여된 기능·의무 및 권한을 넘겨받고, 증권산업법(Securities Industry Act)에 의하여 회사등록감독관(Registrar of Companies) 및 회계감독관에 부여된 기능·의무 및 권한을 넘겨받아 행사하고 있다.<sup>59)</sup>

즉 싱가포르통화청은 관련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은행·보험 및 증권 등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 및 외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 말레이시아

### (1) 목적

1958년 말레이시아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은 말레이시아중앙은행(Central Bank of Malaysia)의 목적을 (i) 화폐 발행 및 화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준비금 유지, (ii)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역할 및 정부에 대한 금융 자문, (iii) 통화 가치의 안정 및 건전한 금융구조(financial structure)의 증진, (iv)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신용 상태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다.<sup>60)</sup>

57)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30C(1), (2).

58)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1(1).

59)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Section 21(2).

60)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1994년 최근 개정), Section 4.

## (2) 기능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은 (i) 화폐 발행 업무, (ii) 지급준비 운영 업무, (iii) 어음 할인(재할인) 및 대출 업무, (iv) 증권 등의 매매 업무, (v) 경제 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운영 업무, (vi) 국고금 관리 등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업무, (vii) 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viii) 외국환 관리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 (ix) 예금자 보호를 위한 명령 조치 업무, (x) 금융 감독 관련 지시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은행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 1) 화폐 발행 업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말레이시아 지역 내에서 법화(法貨)로서 통용되는 은행권 및 주화를 발행하는 권한을 가진다.<sup>61)</sup>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은행권의 인쇄 및 주화의 제조를 관리하며, 은행권 및 주화를 발행·재발행 및 교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sup>62)</sup> 은행권 및 주화의 권종(券種)은 링기트(Ringgit) 단위로 하며,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 결정하고, 양식 및 디자인도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 정한다.<sup>63)</sup>

### 2) 지급준비제도 운영 업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은행(banking institutions)으로 하여금 저축계정, 정기예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율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을 말레이시아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sup>64)</sup>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사회는 그러한 권고 시에 각 은행 종류별(categories)로 다른 지급준비율을 정할 수 있다.<sup>65)</sup> 더 나아가서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사회는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권고를 할 때 곧 바로 권고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권(direction)을 발동할 수 있다.<sup>66)</sup>

61)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20.

62)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22.

63)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23(1).

64)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7(1).

65)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7(2).

### 3) 어음 할인(재할인) 및 대출 업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i)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12개월 이내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어음 및 약속어음, (ii)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12개월 이내인 농업 자금 조달 또는 농산물의 마케팅을 위한 환어음 및 약속어음, (iii)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재정증권(treasury bills), (iv)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행되는 환어음 및 재정증권을 할인 또는 재할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sup>67)</sup> 또한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농수산물의 생산 또는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수산업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ies) 등에게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정부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도 대출을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sup>68)</sup>

이외에도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재정증권을 담보로 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을 공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증권이나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 할인·재할인 또는 매입할 수 있는 적격 환어음 및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하여 12개월 또는 재무부의 승인 하에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을 공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sup>69)</sup>

또한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인가받은 금융기관(licensed institutions) 등이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지급 중단이 발생하려는 상황의 경우에는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그러한 금융기관에게 증권이나 주식을 담보로 하여 긴급대출을 할 수 있으며,<sup>70)</sup> 이외에도 통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담보로 하여 은행 및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게 특별 대출 기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sup>71)</sup>

### 4) 증권 등의 매매 업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i) 재무부의 승인 하에 발행하는 증권, (ii)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12개월 이내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어음 및 약속어음 및 (iii) 취득일로

66)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9(1), (2).

67)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e), (f), (m).

68)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ff), (fff).

69)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k), (l).

70)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1A(1)(a).

71)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42.

부터 만기가 12개월 이내인 농업 자금 조달 또는 농산물의 마케팅을 위한 환어음 및 약속어음, (iv)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재정증권, (v) 만기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권 및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다른 증권, (vi)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행되는 환어음 및 재정증권, (vii) 외국정부나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국제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증권, (viii)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증권을 매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sup>72)</sup> 또한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은행이 발행한 예금증서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할 수도 있다.<sup>73)</sup>

#### 5) 경제 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운영 업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부문의 특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투자기금(Special Investment Fund)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sup>74)</sup>

#### 6) 국고금 관리 등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업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 및 재정대리인(financial agen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sup>75)</sup> 즉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국고금을 수입·지출하는 정부관리계좌를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sup>76)</sup>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의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상업은행을 국고금 수납대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sup>77)</sup>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정부와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정부의 재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sup>78)</sup>

또한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중앙정부, 주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금을 수입할 수 있다.<sup>79)</sup> 이외에도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가 될

72)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bb)(ii), (e), (f), (g), (h), (o).

73)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nnn).

74)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ffff).

75)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2(1).

76)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2(2).

77)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2(3).

78)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2(4).

79)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q).

경우에는 정부에 대하여 임시 자금 대출(temporary advances)을 할 수 있다.<sup>80)</sup> 그러한 임시 자금 대출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상환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이든 임시 자금 대출이 일어난 해의 정부의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sup>81)</sup>

#### 7) 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은행<sup>82)</sup> 및 기타 다른 금융기관 간의 어음 교환 및 기타 다른 지급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지역 및 기타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에 어음교환소(Clearing House)를 설립할 수 있다.<sup>83)</sup>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지급결제에 관련하여 은행 및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게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sup>84)</sup>

#### 8) 외국환 관리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1953년 외국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 1953)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sup>85)</sup>

또한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국제협력 업무로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국제금융기관 및 국제통화당국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이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sup>86)</sup> 재무부의 승인 하에 지역적 또는 국제적 통화 정책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수행하고 있는 계획(scheme)에 스스로 또는 정부를 대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sup>87)</sup> 금융 및 경제 연구 및 교육 부문에 있어서 지역적 또는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수행하는 계획에도 참가할 수 있다.<sup>88)</sup>

80)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3(1).

81)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2(3).

82) 여기서 '은행'이라 함은 1989년 은행및금융기관법(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1989)에 정의된 인가은행(licensed bank), 인가종합금융회사(licensed merchant bank) 및 인가금융회사(licensed finance company)를 말한다.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2.

83)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w), 43(1).

84)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w), 43(2).

85)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x)(3).

86)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p).

87)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www).

88)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0(1)(ww).

#### 9) 예금자 보호를 위한 명령 조치 업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일정한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명령(order)에 의한 특별 조치 업무도 수행한다. 즉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재무부의 동의 하에 예금수취기관(deposit-taker)<sup>89)</sup>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동 기관이 지급 정지를 했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금융 안정을 확보·유지하고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i) 인가금융회사(licensed finance company)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ii) 인가금융회사에 자금을 대출하여 그 인가금융회사가 예금수취기관의 재산 및 채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iii) 은행에 자금을 대출하고 그 은행이 예금수취기관의 재산 및 채무를 인수하는 인가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관보에 공고되는 명령에 의하여 내릴 수 있다.<sup>90)</sup> 다만 그러한 조치는 예금수취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예금수취기관의 무담보자산이 그 예금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sup>91)</sup>

#### 10) 금융 감독 관련 지시 업무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사회는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중앙은행법, 1983년 이슬람은행법(Islamic Banking Act 1983) 및 1989년 은행및금융기관법(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1989)에 의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를 할 수 있으며,<sup>92)</sup> 더 나아가서 그러한 권고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명령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sup>93)</sup>

### 4. 대만(중화민국)

89) '예금수취기관'(deposit-taker)이라 함은 '1989년 은행및금융기관법' 제25조에 위반하여 예금을 수취하는 자를 말하며, 동 법에 의하여 정의된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 또는 '1972년 전당포업자법'(Pawnbrokers Act 1972)에 의하여 정의된 전당포업자 등을 포함한다(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1B(2)(c)).

90)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1B(1).

91)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1B(2).

92)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7(1)(e).

93)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Section 39(1).

## (1) 목적

중화민국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China Act)에 의하면, 대만(중화민국: Republic of China)의 중앙은행인 중화민국중앙은행(Central Bank of China)(이하 "대만중앙은행"이라 한다)의 목적은 (i) 금융 안정을 증진하고, (ii) 건전한 은행 경영을 유도하며, (iii) 통화의 대내외적 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고, (iv) 위 (i)~(iii) 목적의 범위 내에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sup>94)</sup>

## (2) 기능

대만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은 (i) 화폐 발행 업무, (ii) 지급준비제도 운영 업무, (iii) 은행에 대한 재할인 및 대출 업무, (iv)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업무, (v) 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vi) 외국환 관리 업무, (vii) 국고금 관리 업무, (viii) 경제 조사 업무, (ix) 금융기관 검사 업무, (x)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의 설치·운영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 1) 화폐 발행 업무

대만중앙은행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대만의 화폐(national currency)를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sup>95)</sup> 대만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대만 영토 내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법화(法貨)이다.<sup>96)</sup> 화폐인 은행권과 주화의 권종, 양식, 도안 등은 행정원(Executive Yua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up>97)</sup> 대만중앙은행이 직접 또는 위탁 은행(대만중앙은행의 위임을 받아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발행액(다만 주화 제외)에 대해서는 발행액과 동일한 금액의 금은괴, 외환, 적격 어음 및 증권을 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sup>98)</sup>

### 2) 지급준비제도 운영 업무

은행법(Banking Law)의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은 요구불예금·정기예금 등의 예

94) Central Bank of China Act(1935. 5. 23 제정, 2002. 6. 5 최근 개정), Article 2.

95)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13.

96)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13.

97)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15.

98)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16.

금 및 기타 다른 채무 대하여 대만중앙은행이 정하는 지급준비율<sup>99)</sup>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sup>100)</sup> 대상 예금 및 채무의 범위는 대만중앙은행이 정한다.<sup>101)</sup> 이외에도 대만중앙은행은 필요한 경우 중화민국중앙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의 최대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정일로부터 당좌예금·요구불예금 및 기타 다른 채무의 증가액에 대해서 한계지급준비율(marginal reserve ratio)을 적용할 수 있다.<sup>102)</sup>

### 3) 은행에 대한 재할인 및 대출 업무

대만중앙은행은 은행에 대하여 (i) 산업 및 상업거래 관련 어음으로서 만기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적격 어음 및 (ii) 농업 관련 어음으로서 만기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적격어음을 재할인하거나,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대출(temporary advances)을 해 주며, 3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담보대출 자금을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sup>103)</sup> 대만중앙은행은 그러한 재할인이나 대출에 대해서 한도를 정할 수 있다.<sup>104)</sup> 대만중앙은행은 금융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재할인이나 대출의 이자율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 한다.<sup>105)</sup>

### 4)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업무

대만중앙은행은 금융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은행이 발행한 금융채, 은행에 의하여 인수되거나 보증된 어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sup>106)</sup> 또한 대만중앙은행은 통화 조절의 목적으로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저축증권 및 단기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sup>107)</sup>

99) 중화민국중앙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의 최대율은 당좌예금 및 요구불예금의 경우 25%, 저축예금 및 정기에금의 경우 15%, 기타 다른 채무는 25%이다.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23.

100)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23.

101)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23.

102)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16.

103)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16.

104)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19.

105)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21.

106)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26.

107)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27.

5) 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

대만중앙은행은 그 본점 및 지점에 은행간의 결제 및 어음 교환을 위한 결제 기관(clearing house)을 설치 운영한다.<sup>108)</sup> 대만중앙은행은 은행간의 결제 및 어음 교환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sup>109)</sup>

6) 외국환 관리 업무

대만중앙은행은 국제통화준비금(international monetary reserves)을 보유하며, 외국환의 전체적인 관리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sup>110)</sup> 대만중앙은행은 국제수지 상황을 고려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환의 수요 및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111)</sup> 이외에도 대만중앙은행은 (i) 외국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ii) 은행 및 기업에 대하여 외국환 업무 영위 인가를 해주고 감독하며, (iii) 외국환 매매를 결제하고, (iv) 대내외 송금을 검사하고 승인하며, (v) 외국통화·환어음 및 증권을 매매하며, (vi) 외국환의 수입 및 지급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을 하며, (vii) 기타 외국환 관련 업무를 영위한다.<sup>112)</sup>

7) 국고금 관리 업무

대만중앙은행은 국고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현금계정을 관리하며, 중앙정부대행 기관(Central Governmental agencies)의 현금계정, 어음 및 증권을 관리한다.<sup>113)</sup> 또한 대만중앙은행은 국내외에서 발행된 국채 및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 업무도 수행한다.<sup>114)</sup>

8) 금융기관 검사 업무

대만중앙은행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검사권은 재

108)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32.

109)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32.

110)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33.

111)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34.

112)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35.

113)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36.

114)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37.

부부가 정한 은행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된다.<sup>115)</sup> 대만중앙은행은 신용협동조합(credit cooperatives)과 농업협동조합(farmers' associations)의 신용사업부분에 대하여서는 정부금융기관(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에게 그 검사권을 위임할 수 있다.<sup>116)</sup>

#### 9) 경제 조사 업무

대만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경제 조사, 금융통계 수집 및 통화경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sup>117)</sup>

#### 10)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의 설치·운영 업무

대만중앙은행은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만중앙은행에 재에치한 저축예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여러 가지 기금(funds)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sup>118)</sup>

### III.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우선 아시아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목적 및 기능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목적은 한국은행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1조는 한국은행의 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 도모라고 할 수 있다. 물가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의미한다.<sup>119)</sup> 그리고 한국은행법상 위

115)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38.

116)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38.

117)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39.

118) The Central Bank of China Act, Article 20.

119) 한국은행 법규설, 「주제별 해설 한국은행법」 (1999. 10), 7면(이하 “주제별 한국은행법 해설”이라 함); 한국은행 법규설, 「조문별 해설 한국은행법」 (2000. 6), 8면(이하 “조문별 한국은행법 해설”이라 함). 동 조에 규정된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은 (i) 화폐 발행 업무, (ii)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 수입(受入) 및 예금지급준비제도 운영 업무, (iii)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업무, (iv)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업무, (v)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여수신 업무, (vi) 민간에 대한 업무, (vii) 지급결제제도 관리·감시 업무, (viii) 외국환 업무, (ix) 경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작성 업무, (x) 감독당국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아시아 주요국 중앙은행의 목적 및 그 기능에 관한 내용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건전한 금융 산업 발전의 증진’을 목적 조항에 추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시아 금융 허브 국가를 육성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각각 명시적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금융서비스 부문의 육성” 및 “건전한 금융 구조(financial structure)의 증진”을 중앙은행의 목적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발전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센터 설립 및 금융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여기에 일정 부분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sup>120)</sup> 또한 급격히 국제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금융 환경 하에서 국내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선진화된 금융 산업 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목적의 하나로서 “건전한 금융 산업 발전의 증진”을 목적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이러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아시아 금융 허브 국가로 금융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대만의 중앙은행은 그 업무로서 특징적인 것이 경제 발전(말레이시아 및 대만의 경우) 또는 금융센터 및 금융 전문 인력 양성(싱가포르의 경우)을 위한 기금(fund)을 설치·운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아시아 금융 허브 국가로의 육성을 지향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 금융센터 육성 및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투자기금(Special Investment Fund)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가 추

단이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은 목적 달성의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제별 한국은행법 해설, 6면; 조문별 한국은행법 해설, 7면.

120)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을 위한 금융인력 양성과 중앙은행의 역할,” 금융경제연구(제177호), 2004.4 참조.

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 중심지 육성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큰 과제중의 하나가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서 금융 허브 국가의 육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금융센터의 육성 및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할 때, 중앙은행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도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의 국제 금융센터 및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의 업무 수행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한국은행의 업무 범위에 “국제 금융센터로의 육성 및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 및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전한 금융 산업 발전의 증진”을 목적 조항에 추가했을 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 2.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 조항에 추가

금융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 증진을 중앙은행의 목적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121)</sup> 이는 최근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서 종전의 전통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 이외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 유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목적 조항에 추가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3년 9월 제7차 한국은행법 개정 시에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총괄 관리 및 감시 기능을 대폭 보완하여 그 업무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sup>122)</sup> 즉 개정된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23)</sup> 그리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121) 참고로 일본 이외에도 금융 선진국인 독일, 스위스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수의 국가가 지급결제제도의 관리·운영을 그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22) 개정 전에는 한국은행법 제81조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만 하고 있어, 단순하고 그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123) 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 한국은행법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의 지급결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sup>124)</sup>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도 지급결제제도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지대함을 인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아직 그 목적 조항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론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그 업무의 하나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밑줄 친 부분은 필자 강조) 지급결제제도의 관리·운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sup>125)</sup> 최근의 추세에 있어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가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임을 감안했을 때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sup>126)</sup>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목적 조항에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그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되는 이점이 있게 될 것이다.

### 3. ‘금융 안정의 도모’를 목적 조항에 추가

최근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서 금융 안정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는 그 목적의 하나로서 금융 안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식·김태준(2003)<sup>127)</sup>은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발전 방안의 하나로서 금융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Ferguson(2003)<sup>128)</sup>도 “금융 안정이 중앙은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심사

밑줄 친 부분은 필자 강조.

124)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25) 이 부분도 법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만 적용되게 되어 있어서, 한국은행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도모’의 목적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126) ‘안전성(security)’ 보다 ‘안정성(stability)’이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서 더 적합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도 “...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payment and clearing systems.”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27) 김대식·김태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글로벌 시대의 한국금융』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 275면~323면.

128) Roger W. Ferguson, Jr., “Should Financial Stability Be An Explicit Central Bank Objective?,” a paper presented for the BIS Conference on “Monetary Stability, Financial

(vital interest)이며 중앙은행의 아주 적합한(appropriate) 목적이고, 또한 항상 중앙은행의 근본적인(fundamental)인 목적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29)</sup> Ferguson(2003)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일본은행의 목적으로서 금융 안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면서, "신용 질서 유지에의 기여"를 명시적인 금융 안정의 목적으로 보고 있다.<sup>130)</sup>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 안정에 대한 임무를 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1997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은행감독 권한이 없어진 한국은행도 여전히 중앙은행으로서 금융 안정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금융 안정의 도모"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 도모를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추가하면 중앙은행의 주요 목적인 물가 안정과 충돌하게 되어 오히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목적 조항에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즉 금융시장의 혼란 등 금융 위기의 발생 시에 금융 안정을 위하여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했을 때 오히려 물가 안정에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도모의 목적과 병렬적으로 둘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목적 추구는 최종 대부자 기능 및 통화 정책 수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sup>131)</sup>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monetary stability)과 금융 안정의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해 왔으며,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중요도가 변화할 따름이라는 점<sup>132)</sup> 등으로 비추어 보아, 위 두 가지 목적이 조화롭게 수행되는 한 금융 안정 목적 수행이 물가 안정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IV. 맺음말

"Stability and the Business Cycle," held in Basel, Switzerland on 28-29 March 2003. 이외에도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의 국가도 명시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 안정의 도모를 중앙은행의 목적으로서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29) Id. at 1, 20.

130) Id.

131) 김대식·김태준, 309면.

132) 상계논문, 309~310면.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금융 허브 국가로 육성한다는 현 정부의 전략에 비추어 보아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발 맞추어 중앙은행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금융의 국제화·전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최근의 금융 환경 하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은 금융 선진국인 일본 및 아시아 금융 허브 국가로의 추진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대만 등의 중앙은행의 목적 및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상을 재정립해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의 입법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국내 금융 산업 육성 및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전한 금융 산업 발전의 증진”을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중앙은행의 기능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에 관한 내용을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최근의 변화하는 금융 환경 하에서 절실히 필요한 “금융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목적 조항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參 考 文 獻 >

- 김대식 · 김태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글로벌 시대의 한국금융』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2003).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을 위한 금융인력 양성과 중앙  
은행의 역할,” 금융경제연구(제177호), 2004. 4.
- 한국은행 법규실, 「주제별 해설 한국은행법」, 1999. 10.
- , 「조문별 해설 한국은행법」, 2000. 6.
- 한국은행법 전문.
- 日本銀行法 전문.
- Central Bank of China Act 전문.
-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전문.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전문.
- Roger W. Ferguson, Jr., "Should Financial Stability Be An Explicit Central  
Bank Objective?," a paper presented for the BIS Conference on  
"Monetary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 and the Business Cycle,"  
held in Basel, Switzerland on 28-29 March 2003

## SUMMARY

### A Comparative Review on Purpose and Function of Central Bank

- Focusing on Japan, Singapore, Malaysia and Republic  
of China -

Ko, Dong-Won

(A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Law,  
Konkuk University)

This paper is to review purposes and functions of certain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one of advanced financial countries), Singapore, Malaysia and Republic of China (Taiwan) (all of which are one of the countries which pursue a Asian financial hub country) and then to shed some lights on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Bank of Korea, the central bank in Korea. The reason for such analysis is that the function or role of the Korean central bank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Bank of Korea should support the strategy of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which pursues a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country and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is greatly emphasized in the rapidly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domestically and worldwide due to financial globalization and innovation.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urposes and roles of such Asian countries, this paper suggest three main improvements. First, "enhancement for development of sound financial industry" should be put into one of the purposes of the Bank of Korea, considering that (i) the relevant laws of the Asian countries such as Malaysia and Singapore (both of which pursue

Asian financial hub country) prescribe expressly such function as one of the purposes of central banks, and (ii) the Bank of Korea should play a key role in pursuing a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country. Second, "pursuit of s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payment settlement system" should be also included in the purposes of the Bank of Korea (although the current Bank of Korea Act prescribes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the payment settlement as one of the activities, not purpose of the Bank of Korea), based on the case of Japan and the importance of a central bank in such settlement system in a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Finally, "enhancement of financial stability" should be put into one of the purposes of the Bank of Korea, considering that (i) the Japanese central bank has such function as one of the purposes, although it does not have bank supervision power and (ii) the role of a central bank for improving the financial stability as a last resort recently becomes greatly emphasized in worldwide.